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5. 8. 29.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8.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8. 18.

다. 상정일자: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5. 8. 29.)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원순환과

가. 제출경위

1)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자원순환과)

2) 제 출 일 : 2025. 8. 14.

3) 회 부 일 : 2025. 8. 18.

나. 제출이유

재활용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전문가를 증원하기 위해 제출됨.

다. 주요내용

1)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5년) 연장하여 재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안 제2조의2)

- 2)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구문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
- 3) 민간심의위원 증원을 위해 운용심의위원회 정원을 수정함(안 5조의2)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출
- 3) 기타

가) 입법예고 : 2025. 7. 10. ~ 2025. 7. 30.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신준호 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 조례안은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기금의 계속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 시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전체 정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문장 표현을 정비하고, 조례 전체의 문맥 및 용어를 재정

비하고자 제출됨.

나. 주요 개정 조문

-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은 법령의 재량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위법성은 없으나, 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약칭 사용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 안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 권고에 따른 민간전문가 정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전체 위원 정수를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3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조정하는 것임.

다. 종합의견

-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수집 확대로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원활한 수집·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되었음.
- 마포구 2024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 차고지 재활용품 분류용 마대 구매
 -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제작
 -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물품 지원(마스크, 작업용품)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및 수집·운반 장비 구매
 - 의류수거함 유지보수비
 - 아이스팩 세척 운반비 및 커피박 재활용 사업
 - 스마트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유지관리비

- 자원순환 체험교육 및 1회용품 줄이기 프로그램 관련 위탁운영비와 홍보물품 구매 등의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어 있고,
- 의류수거함, 폐형광등 철제수거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구매 등의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음.
- 집행부에서는 상기 사업 등으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존속기한 연장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기에 법률의 위배 요소는 없음.

<표 1. 기금결산 총괄 내역(3년)>

(단위 : 원)

구분	전년도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감액	조성액	사용액	
2024년	1,054,469,083	128,170,874	213,963,248	85,792,374	1,182,639,957
2023년	1,027,539,604	26,929,479	157,494,009	130,564,530	1,054,469,083
2022년	998,813,537	28,726,067	133,472,147	104,746,080	1,027,539,604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역에 따르면 기금은 분리배출 촉진 홍보, 분리수거용 용품 구매, 선별근로자 및 수집인에 대한 지원, 투명페트병 등 특정 품목의 수거처리 장비 유지관리, 자원순환 교육·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지출되었으나, 총 지출액은 8,579만 2,374원에 그침.
- 반면 수입액은 재활용품, 폐매트리스, 투명페트병 플레이크의 판매대금 및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용료와 예치금의 이자로 2

억 1,396만 3,248원이며, 사업 지출금을 제외한 11억 8,263만 9,957원은 예치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기금 지출 계획 및 지출액(3년)>

(단위 : 원)

구분	당해연도 증감액			
	예산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비고
2024년	145,978,000	85,792,374	58.77%	
2023년	192,558,000	130,564,530	67.81%	
2022년	182,621,000	104,746,080	57.36%	
2021년	235,829,000	163,818,860	69.47%	
2020년	269,845,000	236,056,720	87.48%	

- 기금의 연도별 집행률 현황도 예산편성 대비 저조하여 재원 조성 목적 사업 지출이 한정적이고 대부분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금 활용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기금의 조성 목적에 비해 실질적인 재정집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규정한 일몰제 운영 취지(5년 존속기한 설정 및 일반회계 편성의 곤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기금 설치 가능)와 비교해볼 때, 기금 존속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특히, 편성 사업들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도 집행 가능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제259회 정례회 당시 위원회에서 ‘기금 존속의 불필요성과 2025년도 폐지 필요성’ 등이 지적된 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기금 존폐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의회의 재정통제권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에 있어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 수 증원보다는, 타 자치구 사례와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여 비율 기준(1/2) 충족을 통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25-96
변 호	관련

제안년월일 : 2025. 8. 29.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제5조의2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증원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민간전문가 증원은 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나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존치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제5조의2제2항 중 “6명”을 “8명”으로 하는 것을, “6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명”을 “4명”으로 하는 것을, “2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6명”을 “8명”으로 하는 것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명”을 “4명”으로 하는 것을, “2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제2조의2(기금의 존속 기한) (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 <u>마포구</u> ”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u>마포구가</u>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 4. (생략)	제3조(기금의 조성) -- ----- -----. 1. ----- -- “ <u>구</u> ”----- ----- <u>구가</u> -----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조성) 1. (개정안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u>마포구</u>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 <u>구</u> ----- ----- ----- -----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안과 같음)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6명</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기금운용 또는 청소·재활용 관련 민간전문가 <u>2명</u>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8명</u>-----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현행과 같음) 2. ----- ----- - <u>4명</u>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u>6</u> 명-----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 - <u>2명</u>
---	--	--